제323회 남양주시의회(제1차 정례회)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
2027년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2026. 10. 30.

기획행정위원회
전 문 위 원

2027년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

1. 제안경과

○ 본 동의안은 2026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

2. 제안이유

○ 남양주시정연구원의 주요 정책연구 수행과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2027년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남양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출연대상 : 남양주시정연구원

○ 출연기간 : 2027. 1. 1. ~ 2027. 12. 31.

○ 출연금액 : 2,764,866천원

○ 출연내용 : 남양주시정연구원 인건비, 일반운영비, 목적사업비 등 교부

[출 연 내 역]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7년	2026년	증 감	비 고
계	2,764,866	2,528,057	236,809	2026년 대비 9.37% 증액*
인 건 비	1,765,035	1,387,262	377,773	기본급, 수당, 연금·퇴직급여, 평가급(성과급) 등 보수
일반운영비	396,157	446,900	△50,743	임차료, 업무추진비, 여비, 수선유지비 등 운영 경비
목적사업비	570,700	627,380	△56,680	연구과제 수행·운영을 위한 연구개발비 등
기 타 예 산	32,974	66,515	△33,541	협의체 부담금, 예비비, 자산취득비 등

○ 주요 증액 사유

- 인 건 비 : 인력 확대(10명→13명) 및 평가급(성과급) 지급에 따른 증가

4. 참고자료

○ 출연대상 : 남양주시정연구원

○ 설립형태 :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(재단법인)

○ 개 원 일 : 2025. 7. 28.(법인 설립일 2025. 3. 19.)

○ 소 재 지 : 다산순환로 20, A동 10층 35~39호(다산현대프리미어캠퍼스)

○ 조직구성 : 1팀 2실 1센터

○ 인력현황 : 정원 20명 / 현원 15명(원장 1, 연구직 10, 행정직 4), 파견공무원 3명

○ 주요사업 : 시정 현안 해결, 정책 수요 대응,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등을 위한 분야별 연구기획 및 수행

< 남양주시정연구원 조직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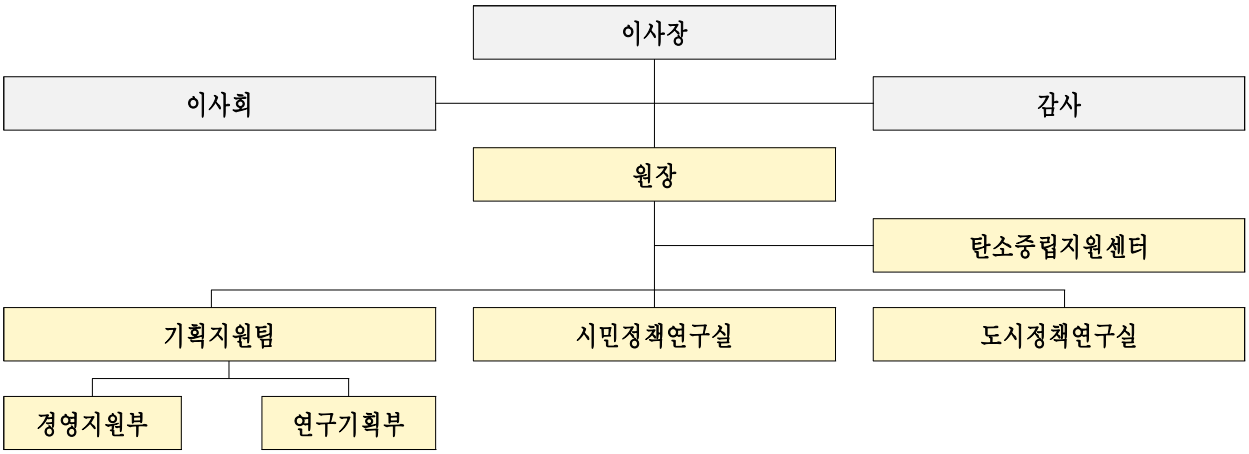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1

나. 관련부서 : 정책기획과

6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 남양주시정연구원의 주요 사업 추진과 기관 운영을 위한 2027년도 출연금의 세출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남양주시정연구원은 우리 시의 중장기 발전과 시정 전반의 과제에 대한 조사·연구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기관으로,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발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됨.

○ 다만, 2027년도 편성 규모는 이월금을 포함한 2026년도 기관 본예산 대비 9.37% 증가한 수준이나, 시 출연금 기준으로는 59.99% 증가한 규모임. 2026년도 결산 후 이월금 상당액을 출연금에서 감액할 계획인 만큼, 결산 결과와 실제 자금 수요를 반영하여 출연 규모와 분할 교부액을 조정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.

○ 또한 연구인력 확충이 실질적인 연구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분야별 연구 수요와 기존 인력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, 채용 시기와 실제 근무기간을 반영하여 인건비를 적정하게 편성·집행하여야 할 것임. 신규 편성된 평가급도 관련 지급기준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집행할 필요가 있음.

○ 아울러 시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,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연구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임. 이를 위해 연구과제 선정 단계부터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강화하고, 기존 연구 및 외부 연구용역과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연구과제의 적정성과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.

○ 나아가 연구 결과의 정책 반영 여부와 활용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, 연구성과를 의회 및 관계 부서와 공유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붙임1 관계법령

☑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제13조(운영재원)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.

1.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
2.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

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.

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☑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남양주시의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·연구를 위하여 남양주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,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·연구
2. 시 및 남양주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·연구
3. 정부,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·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의 연구용역, 원가계산 등의 수탁사업
4.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·협력에 관한 사항
5.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현안 연구
6.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개발 · 운영
7.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